



노인학대 예방 정보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예: 때리기, 밀치기, 강제억제 등)
- 정서적 학대: 모욕, 협박, 무시, 격리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성희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3. 노인학대의 징후

- 신체적 상처(멍, 골절, 화상 등)가 자주 발생
- 불합리한 재산 변동이나 경제적 어려움
- 우울, 불안, 위축, 두려움 등의 정서적 변화
- 돌봄 제공자의 부적절한 태도(고함, 폭언, 무관심 등)
-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또는 기본적인 필요(식사, 의약품 등)가 충족되지 않음

4. 노인학대 예방 방법

- 요양원 내 예방 시스템 구축
- 학대 예방 교육 정기 실시
- 정기적인 상담 및 의견 수렴
- 직원 윤리 강령 및 행동지침 강화
-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신뢰 형성
- 학대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 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및 정당한 보상 제공
- 학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고 체계 마련
- 과중한 업무 분배 방지 및 심리적 지원 제공

5. 노인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

즉시 시설 관리자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 필요 시 응급 조치 및 의료기관 방문
관련 기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
- 경찰 신고: 11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 노력

정기적인 직원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호 조치 시행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강화 노인학대 예방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정서적 학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 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성적 학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방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재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유기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